

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334호 2014. 9. 16. (화)

##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241호 정선군자체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 ..... 1
- 정선군 규칙 제1242호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규칙 ..... 22
- 정선군 규칙 제1243호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2
- 정선군 규칙 제1244호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9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7, FAX:560-2592)

# 규 칙

정선군자체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 정 선 군 수



2014년 9월 16일

정선군 규칙 제1241호

### 정선군자체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

정선군자체감사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정선군 자체감사 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에 따라 정선군수가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읍·면을 포함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군에서 출자·출연한 법인
3. 군이 사업비를 보조한 단체·기관

**제3조(감사의 종류)**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5.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감사
- ②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및 일상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④ 일상감사의 구체적인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제4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제5조(중복감사의 지양)** 다른 행정감사에서 이미 실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 제2장 일반기준

**제6조(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 ① 감사공무원은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 선발한다.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규정」, 「정부 표창 규정」, 「정선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7조(감사담당자 등의 제척)** 군수는 감사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감사담당자 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감사부서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감사담당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감사담당자는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성의 확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로 신규 임명된 사람에게는 6개월 이내에 감사·회계 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장 감사계획

**제10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확정하고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 ② 군수는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고 감사 개시일 15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감사반 편성)**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고 감사담당자는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부서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을 감사담당자로 추가할 수 있으며, 관련분야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관련분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감사실시

**제12조(사전준비)** ① 감사반에 편성된 감사담당자는 착안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자료를 수집·분석 하는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자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감사대상의 문제점 도출을 위하여 예비조사(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 운영방향 및 방법, 감사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제출 요청 등)**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계문서 및 물품 등의 제출
2. 금고, 창고, 문서 및 물품 등의 봉인
3. 관계 공무원이나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출석 및 답변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경위서, 증명서 등 감사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서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제14조(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시행에 따른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관련자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소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보내고 별지 제3호서식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 제5장 감사결과 처리

**제15조(감사결과보고)** 감사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실시 개요
2. 제16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지시
3.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16조(감사결과 처분지시)**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요구서를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 또는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5. 개선요구: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는 부적합하여 감사대상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한다.

1. 훈계: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기관경고: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정선군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현지시정)** ①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현지시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조치 요구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8조(적극행정 면책)** 군수는 감사결과 감사대상부서 소속 공무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제19조(외부기관 수검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외부기관 감사(수사)실시 보고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 동향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검 관계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범죄발생 보고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망실·훼손 보고

### 제6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제21조(재심의신청 등)** ① 군수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의신청을 군수에게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이행결과 제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이행결과 확인)** ①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하고,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19조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재감사를 실시하거나 당초 처분양정에서 한 단계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24조(감사결과 공개) 군수는 감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행정 개선에 도움이 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제7장 보칙

제25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  
(제14조제1항 관련)

제 목 :

[현 황]

○

[확인내용]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뒷장)

[확인자 의견]

[관련공무원 조서]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재직기간	책임한계	현근무처	비고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실무담당자		

[별지 제2호서식]

문 답 서

(제14조제2항 관련)

주 소 :  
소 속 :  
직위와 직명 :  
성 명 :

위의 사람은                    사항에 관하여            년            월            일에서  
(직)                    (성명)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 위의 사건과 관련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답 :

문 : 귀하의 담당직무는?

답 :

(후면)

문 : 더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답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한 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하다.

	20	년	월	일	
진술자		직	성명		(인)
감사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 질 문 서

(제14조제3항 관련)

발부번호	제 호		
제 목			
<p style="text-align: center;"><b>질 문 사 항</b></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 ○○○○ 귀하 정선군 감사관 (인)</p> <p>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답 변 사 항</b></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 정선군 감사관 귀하</p> <p>기관명 : 직 성명 (인)</p> <p>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p>		

[별지 제4호서식]

일련번호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16조제1항 관련)

**【제 목】**

**【기 관 명】**

**【행 정 상】**

**【재 정 상】**

**【지적내용】**

가. 현 황

나. 위법·부당사항

**【처분요구】**

[별지 제5호서식]

일련번호	
수령자	

**현지조치 요구서**  
(제17조제2항 관련)

20 년도 (기관명)에 대한 (감사사항명)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현지조치를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단, 본 조치요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정선군 자체감사 규칙」 제21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 . . . .

감사반장 : 직           성명           (인)

소 관	시행년도	처분종류	금 액	비 고

**【제 목】**

**【현 황】**

**【내 용】**

**【조치할 사항】**

[별지 제6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외부기관 감사(수사) 실시보고

우리 부서의 소관업무(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수사)를 받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 1. 실시기관명(부서) :
- 2. 실시구 : (직무감사)  
(회계감사)  
(수 사)
- 3. 실시기관(또는 예정기관) :
- 4. 감사(수사)관 직 성명 :
- 5. 대상업무(또는 대상자)
- 6. 적출사항 :
- 7. 기 타 :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7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

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

- 1. 수사기관 :
- 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

※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기관 또는 부서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작성요령)

1. 2인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의하여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범행동기·수단 및 전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별지 제9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

1. 회계관계 직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회계직 관리기간

2. 망실·훼손 사실

-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

3. 관계기관의 조치

-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

4. 손해의 보전

-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

5. 기타(참고자료)

기관 또는 부서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2인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망실훼손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의하여 망실훼손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태만여부를 기재한다.(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망실훼손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별지 제10호서식]

## 재심의 신청서

(제21조제1항 관련)

1. 신 청 인	주 소 (기관의 소재지)			
	기 관 명 (현 소속기관명)	직 위		
	성 명	전 화 번 호		
2. 소관 부서				
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				
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감사처분요구가 도달한 날				
<p style="text-align: center;">「정선군 자체감사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p> <p style="margin-top: 20px;">※ 첨부서류 : <span style="float: right;">귀하</span></p>				

## 개 정 이 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0. 3. 22.) 취지를 반영하고, '98. 5. 11. 제정 이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들을 상위법령 등에 부합토록 개선·보완하는 등 자체 감사활동의 내실과 성과를 거양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감사대상기관으로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군에서 출자·출연한 법인>, <군이 사업비를 보조한 단체·기관>을 추가(안 제2조)
- 감사의 종류를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분류하고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정선군 일상감사 운영 규정」의 근거를 신설(안 제3조)
- 감사결과 처분의 종류를 상위법과 일치되게 변경(안 제16조)
-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 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정선군 적극행정 면책 규정」의 근거를 신설(안 제18조)
- 새로 도입된 재심의신청 제도의 규정(안 제21조)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2014년 9월 16일

정선군 규칙 제1242호

###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규칙”을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을 “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을 “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6조에 따른”으로, “납세의 무자 (법 제6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을 “납세의 무자 등을”로, “하거 나”를 “하거나”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다만, 법 제67조의 규 정에 의한”을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 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군수”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지방세무 공무원”을 “지방세무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 율적용”을 “제율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거 두기”를 “거두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당 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형태 로”를 “형태로”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객관적으 로”를 “객관적으로”로 한다.

제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세무조사대상자의선정”을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백하 고”를 “명백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안 에 서”를 “범위 에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세원관리상황과 서면조사 내 용”을 “세원 관리상황과 서면조사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효율적 인 지원등을”을 “효율적인 지원 등을”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있 는”을 “있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세무조사실시”를 “세무조사 실시”로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억원이상”을 “3 억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백만원이상”을 “1백만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3년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

제9조의3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각각 “제1항에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제2항에 따른”으로, “조사공무원”을 “조 사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실시하여 야”를 “실시하여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실시하되, 대상자별 조사기간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자별 조사기간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당 초”를 “당초”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7일전”을 “10일전”으로, “납 세자”를 “납세자”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을 “법 제111조제1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인 하여”를 “인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질별·장기출장”을 “질병, 장기출장”으로, “판단되 는”을 “판단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신청 서”를 “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통지하여 야”를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연2회이상”을 “연 2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납기전”을 “납기 전”으로, “경 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중복조사 가”를 “중복조사가”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납세의무자 의”를 “납세의무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실시하 여야”를 “실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조사대상납세의무자”를 “조사대상 납세의무자”로, “관계인 에”를 “관계인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안에서만”을 “범위에서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 에”를 “조사에”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세무조사사무관리”를 “세무조사 사무관리”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수립하 여야”를 “수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삭계획”을 “조사계획”으로, “조사실 시 사전통지여부”를 “조사실시 사전통지 여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분석·검토하 여”를 “분석·검토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공

무원”을 “조사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조 사 책임자”를 “조사책임자”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10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명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을 “증명서(「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99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원격 지”를 “원격지”로, “따 라”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때”를 “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때”를 “경우”로 각각 한다.

제23조제1항 중 “문제점 에”를 “문제점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 다.”를 “한다.”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징수권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 간이 3월미만인”을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그 지방 자치단체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으로 한다.

제26조 중 “한 다.”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64조에 의거”를 “법 제136조에 따라”로 하고, “1 매씩”을 “1매씩”으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납세의무자 등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세무조사”라 함은 <u>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법 제6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 행위조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u></p> <p>2. (생략)</p> <p>3. “조사공무원”이라 함은 <u>군수</u></p>	<p><u>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u></p> <p>제1조(목적) ----- 「<u>지방세기본법</u>」 제136조에 따른-----</p> <p>-----</p> <p>-----</p> <p>-----</p> <p>-----</p> <p>-----</p> <p>제2조(정의) -----</p> <p>----- <u>각 호와</u>-----.</p> <p>1. ----- 「<u>지방세기본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136조에 따른 -----  <u>납세의무자 등을</u>-----          -----          -----  <u>하거나</u>-----  <u>그 밖의</u>-----          -----          -----          -----  <u>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u>-----.</p> <p>2. (현행과 같음)</p> <p>3. ----- <u>정선</u></p>

로부터 특정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지방세무 공무원을 말한다.

4. “일반조사”라 함은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여부, 과세표준액 및 제율적용 등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조사”라 함은 지방세 탈루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조사 방법으로는 조사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조사”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관계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생략)

8. “전자신고”라 함은 조사대상 납세의무자가 제출할 서류를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 후 전자서명 및 암호화하여 군수가 지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지방세무공무원-----.

4. -----  
-----  
-----  
--제율 적용-----  
-----  
---

5. -----  
-----  
-----  
--거두기-----  
-----  
-----.

6. -----  
-----  
-----  
--해당-----  
-----  
-----.

7. (현행과 같음)

8. -----  
-----  
-----  
--형태로-----  
-----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1. 세무조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실시하며, 부과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의 필요성에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생략)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실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하였거나, 공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납세 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될 사항에 대하여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세무조사 사무의 주관) ① (생략)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조사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  
-----.

제3조(기본원칙) -----  
각 호의-----  
-----.

- 1. -----  
-----  
-----  
객관적으로-----  
-----  
-----.

2.·3. (현행과 같음)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  
-----  
-----  
-----  
-----  
해당 -----  
-----  
-----  
-----.

제5조(세무조사 사무의 주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에 서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일반조사 대상자) ① 일반 조사 대상자는 당해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원관리상황과 서면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같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자진신고납부 풍토 조성 및 경제·사회 정책의 효율적 인 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9조(특별조사 대상자) 특별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 등에 의하여 지방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 는 자로 하되, 다음 각호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 5. 9>

1. 2. (생 략)

제3장 세무조사실시

제9조의2(직접조사의 범위) 세무 조사는 서면조사(별지 제5호 서식)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일반조사 대상자) ① -----  
----- 해당-----  
- 세원 관리상황과 서면조사 내용 -----  
-----.

② -----  
-----  
----- 효율적인 지원 -----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특별조사 대상자) -----  
-----  
----- 있는 -----  
----- 각 호-----  
-----.

1. 2. (현행과 같음)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9조의2(직접조사의 범위) ----  
-----  
----- 각 호-----  
-----  
-----.

- 1. 2. (생략)
- 3. 최근 3억원이상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
- 4. 최근 1백만원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자
- 5. 최근 3년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

제9조의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 1. 2. (생략)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취득가액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

- 1. 2. (현행과 같음)
- 3. ---- 3억원 이상-----
- 4. ---- 1백만원 이상-----
- 5. --- 3년 이내 -----

제9조의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  
-----  
-----  
-----  
-----.

- 1. 2. (현행과 같음)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② 제1항에도-----  
-----  
-----  
-----  
제1항에 따른-----

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조사계획의 준수) 세무조사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시간) 직접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일과시간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기간) ①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대상자별 조사기간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내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등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

제10조(조사계획의 준수) -----  
-----제19조제2항에 따른-----  
----- 조사  
공무원-----.

제11조(조사시간) -----  
----- 해당-----  
----- 실시하여야  
-----.

제13조(조사기간) ① -----  
-----  
----- 실시한다. 다만, 대상자별 조사  
기간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  
다.

② -----  
-----  
----- 당초-----  
-----.

제1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  
----- 10일전----- 납세  
자-----  
----- 법 제111조제1항의--  
-----

제52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군수에게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  
 -----  
 -----  
 -----  
 -----

② 제1항에 따른-----  
 ----- 각  
호의 어느하나에-----인하여 -  
 -----  
 -----.

1. ----- 그 밖의 -----  
 -----
2. -----  
질병, 장기출장 -----  
 -----  
판단되는-----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

③ 제2항에 따른-----  
 -----  
각 호----- 신청서-----  
 -----.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3항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7일이내에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중복조사 금지) ① 같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일반조사는 연2회이상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객관적으로 명백한 지방세 탈루혐의가 있거나 납기전 징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조사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에 대한 중복조사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수색, 영치의 금지) ① 세무조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영치할 수 없다.

1.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4. 그 밖에 -----

④ ----- 따른 -----  
-----7일 이내에-----  
----- 통지하여야-----  
--.

제15조(중복조사 금지) ① -----  
----- 연 2회 이상 ----- . ----- 해당 -----  
----- 납기 전 -----  
----- 경우 -----  
----- .

② -----  
----- 해당 -----  
----- 중복조사가 -----  
----- .

제16조(수색, 영치의 금지)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납세의무자 의 -----  
----- 의 -----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

· 서류 등을 영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치증(별지 제1호서식) 및 영치목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서류등의 예치)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치증(별지 제3호서식) 및 예치목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세무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납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납세의무자 및 그 관계인 에 대한 세무조사권은 당해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등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자로 하여금 조사 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세무조사사무관리

-----  
-----  
-----  
-----  
-----

제17조(장부·서류등의 예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실시하여야-----  
-----

③ 제1항에 따라-----  
-----  
-----  
-----

제18조(세무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납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 관계인에-----해당 범위에서  
만-----.

② -----  
-----  
----- 조사에-----  
-----

제4장 세무조사 사무관리

제19조(세무조사계획) ① 군수는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참작하여 연간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자별 조삭계획은 군수의 책임하에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장소 및 조사실시 사전통지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사책임자가 직접 수립한다.

제20조(세무조사 준비) ① 조사공무원은 일반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분석·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고 조사방향을 설정한 후 세무조사 준비 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지휘) ① (생략)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

제19조(세무조사계획) ① -----  
-----  
----- 수립하여  
야- ---.

② ----- 조사계획-----  
-----  
----- 조사실시 사  
전통지 여부 -----  
-----.

제20조(세무조사 준비) ① -----  
-----  
----- 분석·검토하여  
-----  
-----  
-----  
-----  
-----  
-----  
-----.

② -----  
-----  
----- 조사공무원  
-----.

제21조(조사지휘) ① (현행과 같음)

② -----

회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 책임자가 된다.

제21조의2(조사의 착수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경우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를 휴대하고 이를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결과 보고)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매일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다만, 원격지 조사 등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한 후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상황을 군수에게 중간 보고한다.

- 1. 당해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

-----  
----- 조사책임자  
-----.

제21조의2(조사의 착수 등) ① --  
-----  
- 법 제105조-----  
-----.

② -----  
-----  
--- 증명서(「지방세기본법시  
행규칙」 별지 제99호서식)----  
-----  
-.

제22조(조사결과 보고) ① -----  
-----  
----- 원격지- -  
-----  
----- 따라-----  
-----.

② -----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1. 해당-----

사기간이 장기간인 때  
 2. 특별히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 때  
 3. 군수 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때

제23조(조사 진행관리) ①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조사책임자는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방향을 제시한다.

② (생략)

③ 조사에 따른 적출사항에 대하여는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여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24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와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경우

2. -----

-- 경우

3. -----

----- 경우

제23조(조사 진행관리) ① -----

-----

----- 문제점에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한다.

제24조(세무조사 결과통지) -----

-----

-----

-----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1. 법 제73조에 따른 -----

-----

-----

2. 조사결과의 통지를 하는 날  
 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소멸시효 완성일  
까지의 기 간이 3월미만인 경  
우

3. (생 략)

제25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  
 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  
 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 정보는  
 과세자료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  
 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  
 료는 그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  
 는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6조(세무조사권 남용 공무원  
 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이 아닌 조사수단으  
 로 세무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  
 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  
 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 다.

제27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법 제6  
4조에 의거 군수가 조사공무원  
 별로 1 매씩 발급하고, 퇴직 등

2. -----  
 -----  
 ---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일  
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

3. (현행과 같음)

제25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  
 법의 개발보급) ① -----  
 -----  
 -----  
 -----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  
 -----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세무조사권 남용 공무원  
 에 대한 조치) -----  
 -----  
 -----  
 -----  
 ----- 한다.

제27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 법 제136  
조에 따라 -----1  
매씩-----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파기하여야 한  
다.

② (생략)

-----  
-----.

② (현행과 같음)

개 정 이 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반영 및 모호한 문구를 법령의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 법령과 상이한 세무조사 개시 사전통지일을 일치시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

주 요 내 용

-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을 규칙에 반영(안 제1조, 안 제14조, 안 제21조의2)
- 세무조사 개시 사전통지일을 상위법령과 일치(안 제14조)
  - 규칙상의 세무조사 개시 사전통지일을 지방세기본법과 동일하게 변경(7일⇒10일)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2014년 9월 16일

정선군 규칙 제1243호

###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시행규칙”을 “정선군 사북공공도서관 설치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을 “정선군 사북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서관 운영권자”를 “도서관 운영권자(이하 “운영권자”라 한다)”로,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3호에 따라”로, “정하고 자”를 “정하고 자”로, “군수”를 “정선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서관 운영권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운영권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게시 하여야”를 “게시하여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선군 사북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제1호 중 “장소외”를 “장소 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도서관 운영권자”를 “운영권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서관 운영권자는 정신이상자, 술을 마신 자, 기타”를 “운영권자는 술을 마신 사람, 그 밖에”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서관 운영권자”를 “운영권자”로, “각호”를 “각 호”로, “통제 할”을 “통제할”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대출 하여서는”을 “대출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 중 “도서관 운영권자”를 “운영권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하는 자는”을 “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는 자로서”를 “있는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2권”을 “3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도서관 운영권자”를 “운영권자”로 한다.

제18조 중 “열람기간중”을 “열람기간 중”으로, “일단반환”을 “일단 반환”으로 한다.

제19조 중 “도서관 운영권자”를 “운영권자”로 한다.

제20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u> <u>시행규칙</u></p>	<p><u>정선군 사북공공도서관 설치 조례</u> <u>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 이용 및 도서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u>」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u>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적용범위) <u>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의 이용 및 도서열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 따른다.</u></p>	<p>제2조(적용범위) <u>정선군 사북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u>----- -----.</p>
<p>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u>각호와 같다.</u></p> <p>1. 2. (생략)</p> <p>3. <u>도서의 정리 및 기타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u></p> <p>② <u>도서관 운영권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일 이상의 휴관일을 정하고 자 할 때에는 휴관일 5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p>③ <u>도서관 운영권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휴관 3일전까지 게시 하여야 한</u></p>	<p>제3조(휴관일) ① ----- ----- <u>각 호</u>-----.</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그 밖의</u>----- -----</p> <p>② <u>도서관 운영권자(이하 “운영권자” 라 한다)는 제1항제3호에 따라 ----- 정하고자 ----- 정선군수-----</u> -----.</p> <p>③ <u>운영권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게시하여야-----</u>.</p>

다.

제4조(행위의 제한) 정선군사북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지정된 장소외의 곳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
- 2. (생략)
- 3. 기타 도서관 이용자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권자가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5조(질서유지) ① 도서관 운영권자는 정신이상자, 술을 마신자 기타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출입을 못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운영권자는 이용자가 제4조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대출제한) 도서관 자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대출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2. (생략)

제4조(행위의 제한) 정선군 사북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 장소 외-----
- 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의 -----  
----- 운영권자-----

제5조(질서유지) ① 운영권자는 술을 마신 사람, 그 밖에 -----  
-----  
-----있는 사람-----.

② 운영권자-----  
--- 각 호-----  
----- 통제할-----.

제6조(자료의 대출제한) -----  
----- 각 호-----  
----- 대출하여서는-----  
--.

- 1. 2. (현행과 같음)

3. 기타 도서관 운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미성년자의 열람) 도서관 운영권자는 미성년자의 요구 도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제14조(관외대출절차) ① 도서를 관외에 대출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대출회원증(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도서대출회원증이 있는 자로서 도서를 관외에 대출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열람계에 이를 제출하고 도서를 대출받을 수 있다.

③ (생략)

제15조(관외대출도서) 관외 대출 도서는 원칙적으로 도서의 부분이 가능한 국내 신간 도서에 한 하고 다음에 열거한 도서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1. ~ 6. (생략)

7. 기타 도서관 운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16조(관외대출 도서수) 1회 관외대출 도서수는 2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권자가

3. 그 밖에 -----  
-----

제12조(미성년자의 열람) 운영권자-----  
-----  
-----.

제14조(관외대출절차) ① -----  
-----하는 사람  
-----  
-----.

② ----- 있는 사람으  
-----  
-----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관외대출도서) -----  
-----  
----- 다음  
----- 각 호-----.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

제16조(관외대출 도서수) -----  
----- 3권 -----.  
----- 운영권자-----

<p>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p>
<p>제18조(관외 재대출) 대출 열람기간 중 다른 예약자가 없을 때에는 그 도서를 일단반환한 후 재대출 받아 열람할 수 있다.</p>	<p>제18조(관외 재대출) --- 열람기간 중 ----- ----- <u>일단 반환</u>----- -----.</p>
<p>제19조(관외대출도서의 반환요구) 도서관 <u>운영권자</u>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 도서를 수시 반환시킬 수 있다.</p>	<p>제19조(관외대출도서의 반환요구) <u>운영권자</u>----- ----- -----.</p>
<p>제20조(관외대출의 중지) 도서관 운영권자는 장서의 정리, 기타 도서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의 관외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p>	<p>제20조(관외대출의 중지) ----- ----- <u>그 밖에</u> ----- ----- -----.</p>

개 정 이 유

-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도서수를 2권으로 제한하는 것은 도서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우리군의 실정에 맞지 않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저촉 될 우려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용어 삭제(안 제5조제1항)
  - ‘정신이상자’ 삭제
- 관외대출 도서수를 개정(안 제16조)
  - 1회 관외대출 도서수 변경 : 2권 이내 ⇒ 3권 이내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2014년 9월 16일

정선군 규칙 제1244호

###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을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를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으로,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신고는”을 “신고:”로 각각 한다.

제2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7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를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조사 산정”을 “조사 및 산정”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배수설비의설치·관리”를 “배수설비의 설치·관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를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각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1항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준설·보수등”을 “준설·보수 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1월간”을 “1개월간”으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인당”을 “1명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3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공공하수도의사용”을 “공공하수도의 사용”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입고지서에 의하여”를 “납입고지서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에 따른”으로, “15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두고 발부하여야 한다.”를 “15일 이내에 발부하되,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동시”를 “동시에”로, “따로”를 “별도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때에는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때에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를 “사용량에 따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에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제13조제5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2가구이상”을 “2가구 이상”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주민등록등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2이상”을 “2개 이상”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사용료,점용료및부담금”을 “사용료, 점용료 및 부담금”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징수금중에서”를 “징수금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른”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으로, “또 는”을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같은 호 라목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같은 호 마목 중 “2세대이하”를 “2세대 이하”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같은 호 나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을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로, 같은 조 제3항 중 “자로서”는 “사람으로서”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로서”는 “사람으로서”로,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점용자등에게 관계 자료”를 “점용자 등에게 관계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을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8조의 규정”을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제1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6조의 규정”을 “제26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를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의 규정”을 “제19조”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사용료등을”을 “사용료 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용시설중”을 “이용 시설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를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사용료등”을 “사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당해연도의 징수금중”을 “해당 연도의 징수금 중”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징수금중”을 “징수금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른”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9조의 규정”을 “제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4조의 규정”을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제16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0조의 규정”을 “제20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타회계”를 “타 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3이내”를 “3 이내”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 -.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각 호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1. ----- 신고:- -----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2. ----- 신고:- -----
3.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3. ----- -----신고: ----- -
4.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4. ----- -----신고:-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	③ 제1항에 따라----- -----

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④ 조례 제17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시 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자가 하수관거를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시 소속 공무원이 조사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2장 배수설비의 설치·관리

제4조(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7

-----  
-----  
-----.

④ --- 제17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  
-----.

제3조(일시 사용허가 신청) --- 제4조에 따라-----  
-----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  
-----.

----- 조사 및 산정-----  
-.

제2장 배수설비의 설치·관리

제4조(점용허가 신청) ① -----  
----- 사람은 -----  
-----.

② -----  
-----

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조 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공사 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 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 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 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 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 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 다.

제6조(공사신청의 취하) 조례 제1 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이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 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 따라 -  
-----.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  
--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  
라 -----  
--.

② ----- 따른 -----  
-----  
-----  
-----.

③ ----- 따른 -----  
-----  
-----  
-----.

제6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  
-----  
사람이 -----  
----- 따른 -----  
-----.

② ----- 제1항에 따른 -----

공사취하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익을 저해하거나 기타 취하신청 사유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고 1월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제7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2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1. (생 략)
-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등 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 3. 4. (생 략)

제8조(상수도 급수이외의 사용자 하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

-----  
-----  
-----  
-----.

③ -----  
-----제2항에 따  
른 -----  
-----  
----- 1개월 -----  
-----.

제7조(경미한 공사) -----  
----- 따른 -----  
-----  
-----.

- 1. (현행과 같음)
- 2. ----- 준설·보수 등 -----  
-----  
-----
- 3. 4. (현행과 같음)

제8조(상수도 급수이외의 사용자 하수배출량 인정) ① -----  
-----  
----- 따른다.

다.

- 1. (생략)
-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 또는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의하여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 또는 전력계에 의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가. 시간계에 의한 산정 : 1월  
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나. 전력계에 의한 산정 : 1월  
간 사용량 = 전력키로와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②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  
다.

-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

1. (현행과 같음)

2. -----  
 -----  
 -----  
 -----  
 -----.

가.----- 1개  
월간 -----  
 --- 1개월간 -----

나.----- 1개  
월간 -----  
 ----- 1개월간 -----  
 -----

② -----  
 -----  
 ----- 따른다.

1. -----  
 ----- 따른 -----  
 -----  
 -----.

2. -----  
 -----  
 -----  
 -----

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 인구 1인당 월 4세제공미터로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월의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최초 점검시에 일괄계산 조정한다.

제9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따라-----  
-----.

3. -----  
--- 1명당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  
-----  
-----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  
-----  
----- 3  
개월-----.  
-----.

⑤ 제4항에 따른-----  
-----  
-----.

제9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  
-----.

③ (생략)

제3장 공공하수도의사용

제11조(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공사착공일로부터 완공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군수가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연체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두고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 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 등의 경우 따로 고지서를 발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

③ (현행과 같음)

제3장 공공하수도의 사용

제11조(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① --- 제20조에 따른 -----  
-----  
-----.

② -----  
납입고지서로-----  
-----.

제12조(연체금과 납입독촉) ① --  
----- 그 밖의  
-----  
----- 제27조에 따른 --  
-----  
----- 15일 이내에  
발부하되, 10일 이내의 납부기  
한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동시에 -----  
-----  
----- 별도  
로-----.

③ 제1항에 따른-----

장 발부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3조(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상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배수중지 처분된 자

2. 「정선군 수도급수조례」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3. (생략)

⑥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 때에  
는 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  
-----.

제13조(사용료의 조정) ① -----  
----- 사용량에 따  
라 해당-----  
-----.

② 제1항에도-----  
-----  
----- 해당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경우-----  
--.

1. 법 제22조에 따라-----  
-----사람

2. -----  
-----사람

3. (현행과 같음)

⑥ -----  
-----  
-----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개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 1. (생 략)
- 2. 일반가정용 사용량 중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입증서류(주민등록 등본)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가구분할 조정할 수 있다.

⑦ 업종을 달리하는 2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동일한 양수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산정은 오수 발생량이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조사서에 의하여 소정 기일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제4장 사용료, 점용료 및 부담금
- 제15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
- ① (생 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

-----  
-----  
-----  
-----.

- 1. (현행과 같음)
- 2. ----- 2가구 이상 ----- (주민등록 등본)-----.

⑦ ----- 2개 이상-----  
-----  
----- 따라-----  
-----.

제14조(이의신청) ① --- 제26조에 따른-----  
-----.

- ② (현행과 같음)
- 제4장 사용료, 점용료 및 부담금
- 제15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
-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환불금  
액, 이유, 지급장소 기타 필요  
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  
야 하며 과오납금을 충당한 경  
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당해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  
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  
의 징수금중에서 환불하여야 한  
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과오납  
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등 감면) ① 군수  
는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  
여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  
자부담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 1.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  
자부담금 감면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  
-----  
-- 그 밖에 -----  
-----  
-----  
-----.

③ ----- 해  
당 ----- . --  
-----  
-----  
-----징수금 중에서-----  
-----.

④ ----- 제3항에 따른-----  
-- ----- 사람은 ----  
-----  
-----.

제16조(사용료 등 감면) ① -----  
----- 제25조에 따른-----  
- -----  
-----  
-----  
-----.

- 1. -----  
-----.
-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의 경우 : 면제

나. ~ 다. (생략)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인 경우 : 10세제곱미터 이  
내 사용량에 대하여 감면

마. 2세대이하 거주하는 가구  
로서 하수배출을 위한 자  
가펌프시설을 설치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

바. (생략)

<신 설>

2.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  
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 면제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의 대상자 : 면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법」에 따른-----  
----- 또는-----  
-----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  
-----

마. 2세대 이하 -----  
-----  
-----  
-----

바. (현행과 같음)

사.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  
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에 따른 -----  
----- 또는-----  
-----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은 별지 제15호 서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 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자가 수수료를 감면받 고자 할 때에는 주소·성명·반입량 등에 대하여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⑦ (생략)

제17조(자료제출 명령)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자 및 점용자등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일시사용신고를 한 경우
2.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경우
3.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식에 따라 -----  
-----.

③ -----사람  
으로서-----  
사람은 -----  
-----.

④ ----- 사  
람으로서-----  
-----.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  
-----.

⑥·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자료제출 명령)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점용자 등--  
--관계자료-----  
-----.

1. ----- 제4조-----  
-----
2. ----- 제18조-----  
-----
3. ----- 제19조제3항-----

따라 점용료를 산정할 경우

4.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한 경우

제19조(사용료의 고지) 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  
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  
지서에 의거 수도사용료와 동시  
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하수도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고  
지를 할 수 있다.

제20조(가산금과 납입 독촉)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기타 부담금  
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조례 제18조의 규정  
에 의한 가산금을 합하여 독촉  
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은 상수도 사용자의 경우 상수  
도사용료 독촉장과 동시에 발부  
하고, 상수도를 사용하지 아니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4  
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하  
여야 한다.

제2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조  
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

4. ---- 제26조-----  
-----

제19조(사용료의 고지) ① --- 제  
15조제1항에 따른-----  
----- 따  
라 -----  
-----.

② -----  
----- 따라 -----  
----- 그 밖의 -----  
-----.

제20조(가산금과 납입 독촉) ① -  
-----  
-----  
-- 제18조에 따른-----  
-----.

② 제1항에 따른-----  
-----  
-----  
----- 사람에 대하  
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  
-----.

제2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제19조----- 각 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 1. (생략)
- 2. 급수지역내의 장애인수용 및 이용시설중 인가된 시설의 경우 하수도사용량의 30%를 감면한다.
- 3. (생략)
-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사용료등의 부과취소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 징수금에서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환불금액, 이유,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

의 어느 하나-----  
사용료 등을 -----.

- 1. (현행과 같음)
- 2. -----  
- 이용시설 중 -----  
-----  
-----.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  
-----  
경우

② ----- 사람  
으로서 -----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  
-----.

제2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 사용료 등-----  
-----  
-----  
-----  
-----.

② 제1항에 따른-----  
-----  
-----  
----- 그 밖에 -----  
-----

야 하며 과오납금을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당해연도의 징수금중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중에서 환불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과오납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3조(자료 제출명령)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일시사용신고를 한 경우
2.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경우
3. 조례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할 경우
4.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24조(위탁징수) ① 하수도사용

-----  
-----.

③ ----- 해  
당 연도의 징수금 중-----.

----- 징수금 중-----  
-----.

④ ----- 제3항에 따른-----  
----- 사람은 -----  
-----  
-----.

제23조(자료 제출명령)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 제9조-----  
-----

2. ----- 제14조-----  
-----

3. ----- 제16조제4항-----  
-----

4. ----- 제20조-----  
-----

제24조(위탁징수) ① -----

료는 관련 타회계에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  
수에 필요한 비용은 하수도사용  
료 조정액의 100분의 3이내로  
한다.

----- 타 회계-----  
-----.

② 제1항에 따른-----  
-----  
----- 3 이내-----.

개 정 이 유

- 건축물 신축시 부과되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감면조항 중 국가·지자체에 공익상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감면조항이 없어 지역에 입지하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 됨에 따라 감면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주 요 내 용

- 감면조항 추가(안 제16조)
  -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용어 띄어쓰기 수정 등